

2025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한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I 관련 근거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II 추진 목적

1. 교권 확립과 스승 존경으로 교원의 자긍심 고취
2.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III 추진 방침

1.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문화 확산
2. 유아, 학부모, 교원의 교권 및 유아 인권 상호존중에 대한 교육 기회(예방 교육) 제공
3. 교권 확립을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
4. 교권 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 창출

IV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기준 및 유아 조치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유치원의 유아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침해 행위 유형	개념
공무방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무고(신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상해/폭행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 모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학생이 교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뒤, 주소지에서 허락 없이 기다리거나 주소지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신설)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외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신설)	교사의 직무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폭행,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신설)	학생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사진, 음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밖에 유치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p>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p> <p>「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3. 교육활동 침해 유아에 대한 조치

가. 추진 근거 : 교원지위법 제18조

나. 적용 대상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V 세부 추진 계획

과제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유치원교권보호책임관·업무담당자 지정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유치원교권보호책임관·업무 담당자 지정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피해교원 지원
- (구성 현황) 유치원교권보호책임관(원감) 1명, 유치원교권보호 업무담당자(교무) 1명

 유치원교권보호책임관- 원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유치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교무부장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나.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 근거)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 (구성 방법)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구성 지침)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구성 현황) 교원위원(2명), 학부모위원(2명), 간사(1명)
- (위원 임기) 1년, 소속 변경 시 자격 박탈



심의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요건

【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조】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 정수 2분의 1 초과 불가)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교원		학부모 위원		간사
위원	원감	연구부장	학부모	학부모	교무부장
	○○○	○○○	○○○	○○○	○○○

과제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 ◎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 유아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프로그램 알림
-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2025. 3월. 실시 예정)

나. 유아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유아 전체
- (실시 시기) 연1회 이상 실시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교육 실시(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활용)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및 방법) 연1회 이상 실시
 - 대면: 3월 학부모총회
 - 비대면: 3월 가정통신문 발송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프로그램 알림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연중
- (알림 내용) 교직원·유아·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운영 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학부모 설명회·가정통신문 활용 안내

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연중
- (내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 (운영 방법)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미공개, 수업중인 교사에게 전화 연결 제한

과제 3.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유회복 지원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 교육활동 침해사안 처리 세부절차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운영 내용) 보호조치, 필요시 특별휴가 부여(5일 범위 내 부여 가능),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인권보호센터(교권보호팀) 신청

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신고 및 상담) 유치원 교권보호책임관 또는 업무 담당자, 접수 후 48시간 이내 보고
- (보호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침해사안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사안 보고서’ 공문 교육청 제출)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규칙 등을 근거로 운영
- (심의결과보고)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5일 이내결과 보고(‘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

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단계별 사안 처리로 신속한 유치원 안정화
- (운영 내용) 유아,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세부 절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포함 내용】

※ 근거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 ▶(유 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등
-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

【교직원·학생·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동영상, ppt 등) 활용】

- ▶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more.goe.go.kr/eapc/index.do>) - 자료실(chrome 접속)
-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 교육청 소개 - 통합자료실 - 제2부교육감소속 - 과자료실 - 부서(생활인성교육과)

【교직원 대상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원격 직무 연수 활용】

- ▶ 「교육활동 보호,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꿈꾸다!」(총 15차시, 경기도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VI 기대 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유치원 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유아들의 실질적 놀이학습권 보장 실현
3. 유치원 구성원의 상호 존중하는 풍토조성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



어린이의 꿈과 바른 인성을 알차게 가꾸는 한여울 교육통신

www.hanyeoul.es.kr
☎ 원무실
(031)-365-8080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선생님이 보호받는 교실, 우리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유치원은 안전하고 활기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를 세 번에 걸쳐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p>● 상해, 폭행</p>	<p>● 협박, 손괴</p>	<p>● 명예훼손, 모욕</p>	<p>● 성폭력 범죄, 성적인 언동</p>
<p>● 불법정보유출</p>	<p>●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배포</p>	<p>●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p>	<p>● 부당한 간섭</p>
<p>● 의도적 수업 방해(신설)</p>	<p>● 악성 민원 제기(신설)</p>	<p>● 교원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신설)</p>	<p>● 무고(신설)</p>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중해 주세요!

- 1 문의는 근무 시간 내에
- 2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서
- 3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주세요.



민원 제기 전에

- 1 감정을 가라앉혀요.
- 2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 3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4 민원 신청 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보호자 등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의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 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주세요.
 - 교직원 **개인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안내된 교원안심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 수업 시간 중이거나 근무 시간 외의 전화 통화나 상담 요청 등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학생의 학년, 반, 이름, 답변받을 연락처 등을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민원에 답변을 받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에 답변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교직원의 사생활 등)**을 신청하는 경우
-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출처: 경기도시흥교육청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문

2025. 3. 21.

한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